노인학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건으로 인해 노인학대를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노인학대 신고 시 조사·보호 절차,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보호서비스 및 노인학대예방 관련 교육 등에 대한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1
1. 노인 보호 및 학대 현황 4
1.1. 노인은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1.1.1.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의 개념 4
1.2. 노인학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나요? 7
1.2.1. 노인학대 분류 및 현황 7
2. 노인학대 유형 및 처벌 10
2.1. 노인학대 행위와 처벌에 대해 알고 싶어요. 10
2.1.1. 신체적 학대는 노인학대입니다. 10
2.1.2. 정서적 학대도 노인학대입니다. 14
2.1.3. 성적 학대는 노인학대입니다. 16
2.1.4. 경제적 학대는 노인학대입니다. 17
2.1.5. 방임도 노인학대입니다. 19
2.1.6. 유기도 노인학대입니다. 21
3. 노인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 23
3.1. 노인학대를 알게 되어 신고하고 싶어요. 23
3.1.1. 노인학대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23
3.1.2. 노인학대 신고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27
3.2. 노인학대예방 교육 의무기관은 어디인가요? 29
3.2.1. 노인복지시설 등은 노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9
4. 노인 보호 32
4.1. 노인학대를 당했는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나요? 32
4.1.1.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32
4.1.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3

1. 노인 보호 및 학대 현황

1.1. 노인은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1.1.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은 후손 양육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노인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헌법」 상 보장받는 노인인권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헌법」 제34조제1항·제4항).
- "노인"이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을 말하며,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참조).

> ※ "노인인권"이란?
>
> 유엔총회(1991. 12. 16.)에서 채택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으로는 독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존엄(Dignity) 등이 있습니다. 즉, 노인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00.1.1. 고령화관련 국제행동계획과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p.47 참조).

노인복지의 기본이념

-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2조제1항).
-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2조제2항).
-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2조제3항).

노인학대예방 관련 날

-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제6조제1항).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6조제4항).

> ※ 보건복지부는 매년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2021. 6. 15. 보건복지부(www.mohw.go.kr)-알림-포토뉴스 참조).

그러나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고, 형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정의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 관련 범죄 및 처벌

▪ “노인학대 행위자”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노인’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참조).

▪ 누구든지 노인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학대를 할 경우 해당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 및 제55조의4 참조).

구분	벌칙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학대 관련 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상해, 폭행, 유기, 학대, 협박, 강간 및 추행 등에 해당되는 죄를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

▹ “보호자”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

구분	내용	
	1. 상해와 폭행의죄	√ 상해,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 중상해, 존속중상해(「형법」 제258조) √ 폭행, 존속폭행(「형법」 제260조제1항·제2항)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상습범(「형법」 제264조)
	2. 유기와 학대의 죄	√유기, 존속유기(「형법」 제271조제1항·제2항) √학대, 존속학대(「형법」 제273조)
	3. 체포와 감금의 죄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형법」 제276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형법」 제277조) √특수체포, 특수감금(「형법」 제278조) √상습범(「형법」 제279조) √미수범(「형법」 제280조) √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형법」 제281조)
	4. 협박의 죄	√협박, 존속협박(「형법」 제283조제1항·제2항)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상습범[「형법」 제285조(제283조의 죄에만 해당)] √미수범(「형법」 제286조)
형법	5.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형법」 제297조)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미수범(「형법」 제300조) √강간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강간등 살인·치사(「형법」 제301조의2) √상습범[「형법」 제305조의2(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
	6. 명예에 관한 죄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모욕(「형법」 제311조)
	7. 주거침입의 죄	√주거·신체 수색(「형법」 제321조)
	8. 권리를 방해하는 죄	√강요(「형법」 제324조) √미수범(「형법」 제324조의5, 강요죄만 해당)
	9. 사기와 공갈의 죄	√공갈(「형법」 제350조) √미수범(「형법」 제352조, 공갈죄만 해당)
	10. 손괴의 죄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노인복지법	11. 벌칙	√상해(「노인복지법」 제55조의2) √폭행(「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1호) √상습범(「노인복지법」 제59조의2)
위 1.부터 10. 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관련 콘텐츠

▪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노인학대 관련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콘텐츠명	내용	바로가기
『노인복지』	√ 노인복지 √ 경제적 도움(기초연금, 장기요양급여, 생활비 등) √일자리, 복지서비스, 건강 √안전한 노후보내기(노인학대, 실종된 노인)	링크
『치매 노인』	√치매의 예방 √치매의 치료 및 관리 지원 √치매 노인 보호(실종, 학대)	링크
『아동학대』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아동학대 발견 시 대처방법 √아동학대의 처벌 등 √아동학대 예방	링크

1.2. 노인학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나요?

1.2.1. 노인학대 분류 및 현황

노인학대는 주로 가정 또는 시설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 노인학대가 주로 발생하는 공간은 가정(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부양의무자 등) 학대 외에도 최근 복지시설(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시설학대, 가정 및 시설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로 분류됩니다.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noinboho1389.or.kr), 노인학대알기-정의 및 유형 참조>

노인학대 형태에 따른 분류

▪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자기방임), 유기로 6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콘텐츠 <노인학대 행위와 처벌에 대해 알고 싶어요.>에서 학대 유형별로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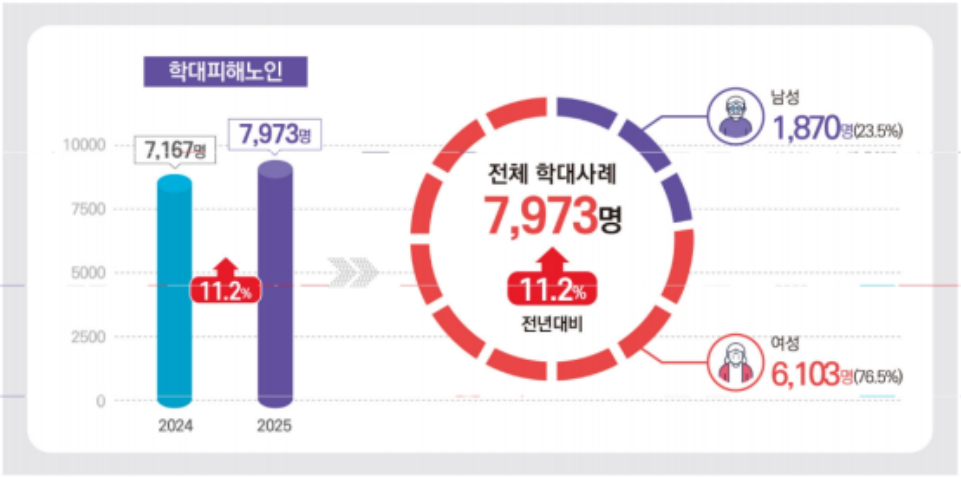
노인학대신고 및 학대 건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노인학대 현황 및 유형

▪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학대피해노인은 7,973명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하였습니다.

🔎 (학대피해노인) 7,973명, 전년 대비 **11.2% 증가**('24년 7,167명 → '25년 7,973명)

- 남성: 1,870명(23.5%) / 여성: 6,103명(7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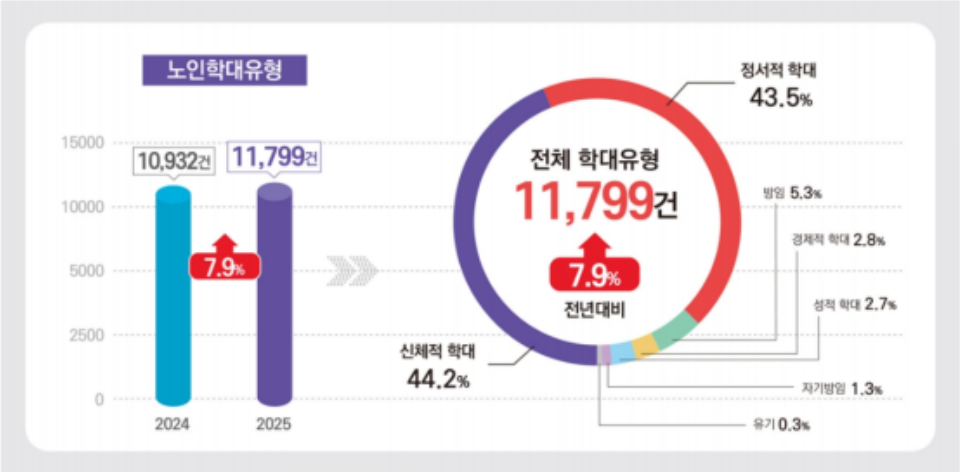
<출처 : 『202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P.12 참조>

▹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라 판단한 사례가 학대사례입니다. 반면, 신고 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 학대 의심 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 위험 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는 **일반사례**로 판정됩니다(출처: 『202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P.v. ~ P.vi. 참조)

▪ 2025년 노인학대 학대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학대유형) 11,799건, 전년 대비 **7.9% 증가**('24년 10,932건 → '25년 11,799건)

- 신체적 학대(44.2%), 정서적 학대(43.5%), 방임(5.3%), 경제적 학대(2.8%), 성적 학대(2.7%), 자기방임(1.3%), 유기(0.3%)



<출처: 『202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P.14 참조>

2. 노인학대 유형 및 처벌

2.1. 노인학대 행위와 처벌에 대해 알고 싶어요.

2.1.1. 신체적 학대는 노인학대입니다.

노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입니다.

▶ 신체적 학대 유형



구분	내용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합니다.	√ 노인을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합니다. √ 노인을 집 밖으로 쫓아냅니다. √ 노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합니다. √ 노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장치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합니다. √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합니다. √ 노인을 집 밖으로 끌어냅니다.
노인을 폭행합니다.	√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폭행합니다. √ 노인을 질질 끌고 다닙니다. √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습니다. √ 노인의 머리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듭니다. √ 노인의 목을 조르거나 손 또는 몸으로 짓누릅니다. √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합니다. √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입힙니다. √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해 노인에게 화상을 입힙니다.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합니다.	√ 노인을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 노인의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예: 끈으로 묶어두기, 수갑채우기, 손·발목 묶기 등)를 설치합니다.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합니다.	√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합니다. √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합니다.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합니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시킵니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밥통, 냉장고)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킵니다. √ 노인을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심장 관련, 당뇨, 혈압 등)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합니다.	√ 노인이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 노인을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하여 일(노동)을 강요합니다. √ 노인이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 노인에게 정신 및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 또는 조건에서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합니다.	√ 노인에게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하게 합니다.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noinboho1389.or.kr), 노인학대알기-노인학대 대표적 행위 참조>

위반 시 제재

신체 상해 및 폭행 처벌

▪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신체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

▪ 상해(「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2).

▪ 폭행(「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6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

노인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 법원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래 시설 또는 기관("노인관련기관"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취업제한명령"이라 함)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함)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 본문).

<노인관련기관>

구분	내용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긴급전화센터 등	√ 긴급전화센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 가족센터(「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의2)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 √ 장애인 쉼터(「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5호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1호) √ 피해장애아동 쉼터(「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5호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2호)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5호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3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단체(「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노인복지법」 제27조의3)
활동지원기관	√ 활동지원기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치매안심센터	√ 치매안심센터(「치매관리법」 제17조)
비영리법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노인인권, 노인복지 등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민법」 제32조)

▪ 위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2항).

※ 노인관련기관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의무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5항).

취업자등에 대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를 부과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제2호사목).

※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자등 점검

노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인가·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6항).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하며,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9항).

위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1,0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를 부과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제2호아목).

2.1.2. 정서적 학대도 노인학대입니다.

노인에게 위협·협박하는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로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동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 정서적 학대 유형



구분	내용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합니다.	√ 노인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합니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 노인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 노인의 일상생활(식사 및 일상물품 사용 등)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합니다.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합니다.	√ 노인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합니다. √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합니다. √ 노인의 이성교제를 방해합니다.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이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등의 위협·협박을 합니다. √ 노인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합니다. √ 노인에게 창피를 줍니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합니다. √ 노인에게 혐오스러운 말을 합니다. √ 노인을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노인과 관련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시킵니다.	√ 노인의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시킵니다. √ 노인의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노인을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s://noinboho1389.or.kr), 노인학대알기-노인학대 대표적 행위 참조>

위반 시 제재

정서적 학대행위 처벌

▪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폭언, 협박 및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6호).

▪ 정서적 학대(「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6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6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은 노인학대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 법원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래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함)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 본문).

※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노인학대 행위와 처벌에 대해 알고 싶어요-신체적 학대는 노인학대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3. 성적 학대는 노인학대입니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은 성적 학대입니다.

▶ 성적 학대 유형



구분	내용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합니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습니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합니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및 애무 등을 요구합니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집니다. √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합니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합니다.	√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합니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합니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킵니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합니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보게 합니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합니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노출시켜 놓습니다.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s://noinboho1389.or.kr), 노인학대알기-노인학대 대표적 행위 참조>

위반 시 제재

성적 학대행위 처벌

▪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2호).

▪ 성적 학대(「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2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6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은 노인학대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 법원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래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함)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 본문).

> ※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노인학대 행위와 처벌에 대해 알고 싶어요-신체적 학대는 노인학대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4. 경제적 학대는 노인학대입니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 보험 등을 해약하는 것도 경제적 학대입니다.

경제적 학대 유형



구분	내용
노인의 소득,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합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및 재산 등을 가로챕니다.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연금 및 재산 등을 가로챕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합니다. √ 공적 부조(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합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합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습니다. √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줍니다. √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합니다.	√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변경합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합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합니다(명의 도용).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 및 보험 등을 해약합니다. √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및 위임장 등에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합니다. √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합니다. √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했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합니다.	√ 노인이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합니다. √ 노인 자신의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 노인의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합니다. √ 노인의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합니다. √ 노인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합니다. √ 수표 및 그 밖의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합니다.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s://noinboho1389.or.kr/), 노인학대알기-노인학대 대표적 행위 참조>

위반 시 제재

경제적 학대행위 처벌

▪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4호·제5호).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4호)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5호)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1호).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6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은 노인학대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 법원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래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함)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 본문).

> ※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노인학대 행위와 처벌에 대해 알고 싶어요-신체적 학대는 노인학대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5. 방임도 노인학대입니다.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는 방임(放任)입니다.

방임 유형



구분	내용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합니다. √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합니다. √ 노인 스스로 청결유지(목욕, 빨래 등) 또는 환경관리(청소 등)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합니다. √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합니다. √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합니다. √ 노인이 부적절한 주거공간(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합니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관련 업무(세금 및 각종 요금 납부)를 방치합니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용돈, 종교 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방해하거나 혹은 소홀히 합니다. √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합니다(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습니다(자기방임).	√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 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합니다. √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합니다.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합니다. √ 노인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s://noinboho1389.or.kr), 노인학대알기-노인학대 대표적 행위 참조>

위반 시 제재

방임 행위 처벌

▪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3호).

▪ 노인에게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6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 법원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함)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 본문).

> ※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노인학대 행위와 처벌에 대해 알고 싶어요-신체적 학대는 노인학대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6. 유기도 노인학대입니다.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는 것은 유기(遺棄)입니다.

유기 유형



구분	내용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합니다.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합니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및 정신질환 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합니다.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립니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합니다.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s://noinboho1389.or.kr/), 노인학대알기-노인학대 대표적 행위 참조>

위반 시 제재

유기 행위 처벌

▪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3호).

▪ 노인에게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유기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6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은 노인학대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 법원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함)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 본문).

> ※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노인학대 행위와 처벌에 대해 알고 싶어요-신체적 학대는 노인학대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노인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

3.1. 노인학대를 알게 되어 신고하고 싶어요.

3.1.1. 노인학대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노인학대 신고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노인학대 신고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접수

▪ 노인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서(☎112)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으로 신고하거나, 전화로 신고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통해서도 학대발생 장소, 학대발생 기간, 신고 내용(500자 이내) 및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noinboho1389.or.kr), 노인학대알기-노인학대 신고방법>

> ※ 앱스토어에서 ‘노인학대’, ‘나비새김’, ‘노인지킴이’등을 검색한 후 다운로드 가능하며, 노인학대 신고앱의 기능과 이용방법은 ‘노인학대신고앱 이용방법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접수 방법

▪ 노인학대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노인학대를 알게 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상담, 신고가 가능합니다.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 정보, 노인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가능합니다.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노인학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 가능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인인권보호사업과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하되, 노인인식 개선 교육(경로효친교육 등), 노인자살 예방교육,

사업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제2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노인학대를 당했는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나요?-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보기에는 노인학대인 것 같은데요. 노인 및 그 가족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노인복지법」상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따라서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바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noinboho1389.or.kr), 노인학대알기-FAQ>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구분	내용
1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료법」 제3조제1항)
2	√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1항)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간호법」 제2조제3호) 및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3	√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노인복지법」 제27조의2)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복지상담원(「노인복지법」 제7조)
4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58조)
5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6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7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8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9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
10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11	√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12	√ 응급구조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13	√ 의료기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
14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국민건강보험법」)
15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지역보건법」 제2조)
16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노인복지법」 제31조)
17	√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제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Q: 저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제가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받나요?

A: 네. 처벌받습니다.

의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급구조사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이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합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noinboho1389.or.kr), 노인학대알기-FAQ>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니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신고인의 신분보장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비밀누설의 금지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 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3호).

Q: 노인학대를 신고하려는데, 혹시라도 제가 신고한 게 밝혀져 옆집 사람에게 해코지를 당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입니다.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신고인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A: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또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에게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신고인은 신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지 못해 신원을 노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따라서 노인학대신고는 참견이 아닌 도움이기 때문에 학대로 고통 받고 있는 노인을 위해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noinboho1389.or.kr), 노인학대알기-FAQ>

3.1.2. 노인학대 신고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 후 현장조사 및 학대판정 등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 이후 진행절차

전화 또는 신고앱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노인학대 의심사례가 신고되면 상담원은 신고자로부터 관련 정보 파악을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노인학대 여부 판단을 합니다. 학대 여부 판단 후 서비스(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연계, 상담 및 치료 서비스 등)를 제공하며 지속적 학대 재발여부를 확인해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출처: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noinboho1389.or.kr), 노인학대알기-노인학대 개입절차>

신고접수 후 지체없이 현장출동 하여 필요 시 응급조치를 합니다.

현장출동 의무

▪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1항).

▹ 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의 동행 요청은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6서식)로 합니다. 다만, 해당 노인학대신고가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요청하고 난 후에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7).

응급조치의무

▪ 현장에 출동한 사람(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은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5항).

위반 시 제재

▪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

Q: 저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노인이 학대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 등에 상담·신고합니다.

* 국번 없이 1577-1389 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또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하는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

2.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3.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했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합니다.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noinboho1389.or.kr), 자료실-교육자료-노인학대예방교육-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자료(노인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직군) p.17 참조>

신고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사 및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2항).

▹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3항).

▪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4항).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6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제1항).

위반 시 제재

▪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

현장조사서 제시

▪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제3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8제2항).

노인학대 여부 판단 후 사회서비스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학대 여부 판단

▪ 현장조사 및 학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그 결과 학대라고 판단되는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및 잠재적 사례)와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 또는 학대가 의심되었으나 판정 결과 학대의심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일반사례로 구분합니다(보건복지부, 『202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v~vi면 참조).

노인학대 사회·보호서비스

▪ 학대사례 판정 후에는 학대피해노인 또는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비롯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연계, 지정양로시설 연계, 중독, 신체·정신적 문제 등 치료 연계, 학대행위자 상담 및 법률 서비스 등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noinboho1389.or.kr), 자료실-교육자료-노인학대예방교육-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자료(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직군) 15면 참조].

노인학대 종결 후에도 재발여부를 확인해 사후관리를 합니다.

재발방지 확인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0제1항).

재발방지 노력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노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0제2항).

▪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0제4항·제5항).

위반 시 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제2호).

3.2. 노인학대예방 교육 의무기관은 어디인가요?

3.2.1. 노인복지시설 등은 노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교육 대상자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
-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
-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교육 내용 및 방법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제1항).

▪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제2항·제3항).

> ※ 노인학대신고의무자 학대신고의무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www.kohi.or.kr) 에서 신청 및 수강 가능합니다.

인권교육

교육 대상자 및 교육 내용

▪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 중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해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인권교육은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제2항).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 중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2항).

> ※ 노인인권교육 안내 및 노인인권교육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https://noinedu.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방법

▪ 인권교육은 가급적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교육(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 대면 교육은 집합 교육과 방문 교육으로 구분되며, 집합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노인학대로 판정된 인권교육대상시설은 방문 교육을 진행합니다(「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제3항).

교육 기관 및 경비

▪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

-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법」)
-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복지법」 제39조의5)
- 한국보건복지인재원(「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 인권교육 경비의 징수

- 집합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 방문 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교통비

> ※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노인 보호

4.1. 노인학대를 당했는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나요?

4.1.1.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사업과 노인학대예방사업, 노인인식 개선 교육, 사업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참조).

-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참조).
-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둡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 참조).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 역할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6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4).

구분	내용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그 밖에 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신고 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 노인의 인권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

※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체 현황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s://noinboho1389.or.kr), 기관소개-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란?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학대 행위자와 분리하고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함)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제1항).

입소대상자

▪ 쉼터의 입소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에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제5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제1항).

1. 학대피해노인이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입소 요청에 학대피해노인이 동의(학대피해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노인학대행위자가 아닌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입소 보호기간

▪ 쉼터의 입소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재입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총 입소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제3항).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재발의 우려 등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대피해노인의 동의 및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대피해노인을 재입소시킬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제2항).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퇴소 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은 지정된 전국 양로시설로 연계하여 입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출처: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noinboho1389.or.kr), 자료실-교육자료-노인학대예방교육-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자료 참조).

쉼터 서비스 내용

▪ 쉼터의 서비스 제공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상담,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그 보관 및 학대피해노인의 건강검진 지원

쉼터 서비스 절차



구분	내용
1. 노인학대사례 발생 및 쉼터 입소 의뢰	√ 노인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쉼터입소 의뢰, 쉼터입소의뢰서(노인보호전문기관 작성)
2. 입소대상자 결정	√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협의 또는 사례회의, 회의록 작성
3. 인테이크 및 입소 안내	√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대상 설명, 입소결정, 이송서비스
4. 건강진단	√ 협약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서 발부
5. 입소	√ 쉼터입소동의서(입소노인작성), 노인보호동의서(학대행위자 이외 가족 작성, 쉼터입소동의서를 갈음), 노인학대사례판정서, (입소 1주일 이내 제출), 주민등록증 등 증명서, 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 쉼터입소확인서(쉼터작성), 성인우울증 자가검진, 자아존중감 척도검사 실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6. 사정 및 개입계획	√ 입소자관리카드 등 필요서식 작성
7. 서비스(프로그램 등) 제공	√ 심신안정,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사회성향상훈련, 여가생활지도, 입소자 상담 및 관찰일지, 입소자 면회일지 등 작성
8. 퇴소 상담	√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상담,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협의 또는 사례회의, 회의록 작성

<출처: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www.cb1389.or.kr), 사업안내-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참조>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운영하는 각 지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s://noinboho1389.or.kr/)-기관소개-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